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한부모가족 구성원 우대〉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91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에 있어 현행법상 ①농어촌 거주 여성, ②다문화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③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u>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u>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 ----- -----. 1. <u>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u> 2.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다문화가족의 구성원</u> 3.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4조

현행	개정안
⑥ (생략)	<u>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u>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제도”는 대상자의 경영능력과 의지를 고려해 후계농·청년농 등 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연계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전문(專業)적 농어업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한 후 농지 및 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과(법 제8조제1항),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어업인 영농·영어정착지원사업”(법 제8조제4항)을 실시하고 있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구 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목적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자금 지원 및 농지·자금·교육 지원 등을 연계하여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고령화 완화
사업 대상	○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 *사업선정자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함
지원 내용	○경종·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조건) 연리 1.5%, 최대 5억원 대출, 5년 거치 20년 상환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95%),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2025년 예산	용자 13,500억 원/ 이차보전 871억 원 (인원: 후계농1,000명, 청년농5,000명)	1,137억 원 (인원: 신규 5,000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업의 지원 대상자인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1)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음(법 제8조제5항).

이러한 규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시행규칙에서는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총 선정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것을 규정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시·군·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할 때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20% 이상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시·도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³⁾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서면평가에서 여성·다문화가족 구성원 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해 총점 100점 기준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함.⁴⁾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인원 1,000명 중 여성은 219명(21.9%),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43명(4.3%)이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5,000명 중 여성은 1,479명(29.6%)임.⁵⁾

개정안은 이와 같은 우대 대상에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⁶⁾ 구성원을 추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서

5) 다문화가족 여부는 지자체 평가 시 가점 부여 후 별도로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농식품부).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가하려는 것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는 149만 가구로 약 6.5%를 차지하고, 다문화가구는 44만 가구로 약 1.9%를 차지하며,⁷⁾ 다문화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은 12.5%임.⁸⁾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488.7만원) 대비 60% 수준(249.6만원)에 불과하고 생계와 양육의 이중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과 함께 교육·복지·고용 등 다수 입법례에서 배려대상 계층으로 규정되어 있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7) 국가통계포털

8)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우선 지원 입법례]

연번	제명	조문 내용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u>대학의 입학기회 확대</u>)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u>「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u>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5(<u>교육비 지원</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u>「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u>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3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u>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u>「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u>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연번	제명	조문 내용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노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u>온라인복권을 판매</u>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u>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u> .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을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개정안은 우대 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복지급여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⁹⁾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음.

9)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목적이라면 다른 입법례와 같이 우대 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¹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